



##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

### 판 결

사 건 2026고정249 저작권법위반  
피 고 인 A  
검 사 김상순(기소), 김지윤(공판)  
판 결 선 고 2026. 6. 1.

### 주 문

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.

### 이 유

#### 1. 이 사건 공소사실

누구든지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(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)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. 9. 18. 17:39경 안산시 상록구 B, C호에서 인터넷 IP '(IPv4 1 생략)'를 이용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고소인 영화사 D의 영화 저작물 'E'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토렌트 프로그램 이용자로 하여금 위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영화사 D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.



## 2. 판단

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,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으므로,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.

판사 이누리 \_\_\_\_\_